

연명의료 결정제도에 대한 안내

“「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2018년 2월4일부터 “연명의료결정제도”가 시행되었습니다. 이 법의 목적은 호스피스·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연명의료결정제도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로 남겨 놓을 수 있습니다.

- 1) **사전연명의료 의향서**는 19세 이상의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.
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.
- 2) **연명의료 계획서**는 말기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담당 의사가 환자와 상담을 통해 작성합니다.
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구분	사전 연명의료 의향서	연명의료계획서
대상	19세 이상의 성인	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
작성	본인이 직접(본인확인 신분증)	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 의사가 작성
설명의무(상담)	상담사(1:1상담)	담당 의사
등록	보건복지부지정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등록(효력발생)	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·등록된 의료기관

3. **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할 수 있는 등록기관 : 국민연명의료기관 누리집에서 검색 가능**
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위한 시설, 인력 등 요건을 갖춘 기관
 - 지역보건의료기관(보건소), 의료기관, 비영리법인, 노인복지관 또는 공공기관 중 보건복지부 장관 지정

충청북도 제천시 등록기관		
기 관 명	주 소	전화 번호
국민건강보험공단 제천단양지사	충청북도 제천시 명륜로 80 (의림동 36-5)	1577-1000
제천시 보건소	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제천시보건소	043-641-3906

